

발행인 : 용산구청장  
 편집인 : 홍보담당관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 용산구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944호**      2018. 2. 28.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고 시

고시 제2018- 19호 : 2018년 용산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행정정보 → 용산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199-6700 / 전송 : (02)2199-5510
- 구보발행일은 매주 금요일(필요시 수시 발행)이며,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

공 람											



**고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8 - 19호

**2018년 용산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 우리 구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25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83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233억원 보다 982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62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90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26억원 입니다.
- ◆ 우리 구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1.0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3%입니다.
- ◆ 우리 구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6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유사 자치단체의 평균 살림 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입 확보와 예산 절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윤광길(2199-6445)

##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용산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251	3,868	383	5,233	4,660	573
	세출예산	4,251	3,868	383	5,233	4,660	573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41.08	42.41	△1.33	36.13	37.05	△0.9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9.30	60.03	△0.73	58.94	60.09	△1.15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56	2	54	△40	△10	△30
재정운영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구-2(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 인구, 재정력을 감안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로 세분화함

## 2. 예산규모

##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5,138	352,545	0	32,831	39,76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14,862	342,822	366,945	386,803	425,13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55,551	100	282,055	100	301,858	100	319,540	100	352,545	100
지방세	79,068	30.94	81,479	28.89	86,406	28.62	93,335	29.21	100,577	28.53
세외수입	31,066	12.16	31,497	11.17	37,380	12.38	42,176	13.20	44,256	12.55
지방교부세	3,305	1.29	3,459	1.23	3,603	1.19	4,413	1.38	4,778	1.36
조정교부금 등	34,951	13.68	38,458	13.63	46,423	15.38	51,907	16.24	59,443	16.86
보조금	86,571	33.88	105,162	37.28	109,547	36.29	107,709	33.71	125,490	35.60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589	8.06	22,000	7.80	18,500	6.13	20,000	6.26	18,000	5.1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25,138	352,545	0	32,831	39,76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14,862	342,822	366,945	386,803	425,13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55,551	100	282,055	100	301,858	100	319,540	100	352,545	100
일반공공행정	22,209	8.69	21,125	7.49	22,381	7.41	28,232	8.84	28,586	8.11
공공질서 및 안전	1,013	0.40	1,090	0.39	1,099	0.36	1,102	0.34	1,175	0.33
교육	3,983	1.56	5,129	1.82	4,787	1.59	4,967	1.55	5,394	1.53
문화 및 관광	3,112	1.22	4,189	1.49	4,623	1.53	5,676	1.78	6,423	1.82
환경보호	13,086	5.12	13,634	4.83	20,616	6.83	22,654	7.09	25,655	7.28
사회복지	104,429	40.86	119,939	42.52	130,042	43.08	129,642	40.57	151,310	42.92
보건	5,827	2.28	7,233	2.56	7,303	2.42	7,861	2.46	7,667	2.17
농림해양수산	211	0.08	183	0.06	156	0.05	168	0.05	214	0.06
산업·중소기업	214	0.08	334	0.12	628	0.21	1,566	0.49	768	0.22
수송 및 교통	4,526	1.77	5,869	2.08	4,632	1.53	5,417	1.70	6,245	1.77
국토 및 지역개발	2,754	1.08	3,254	1.15	3,656	1.21	3,578	1.12	3,570	1.0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582	1.01	2,174	0.77	2,036	0.67	2,097	0.66	4,034	1.14
기 타	91,604	35.85	97,904	34.71	99,899	33.09	106,581	33.35	111,504	31.6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A)	비율 (B-A)/A
합 계	399,809	442,708	42,899	10.73
용산구	386,803	425,138	38,335	9.91
공사공단	13,006	16,422	3,415	26.26
출자출연기관	0	1,149	1,149	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www.yongsan.go.kr](http://www.yongsan.go.kr) 행정정보, 예산/재정정보, 예산일반현황)

- ▶ 공사·공단(1개) :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자치단체 예산 내 편성)
- ▶ 출자출연기관(1개) : 용산복지재단(자치단체 예산 내 편성)

## 3. 재정여건

##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1.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6.19 (41.08)	352,545	162,833 (144,833)	189,712	0	0 (18,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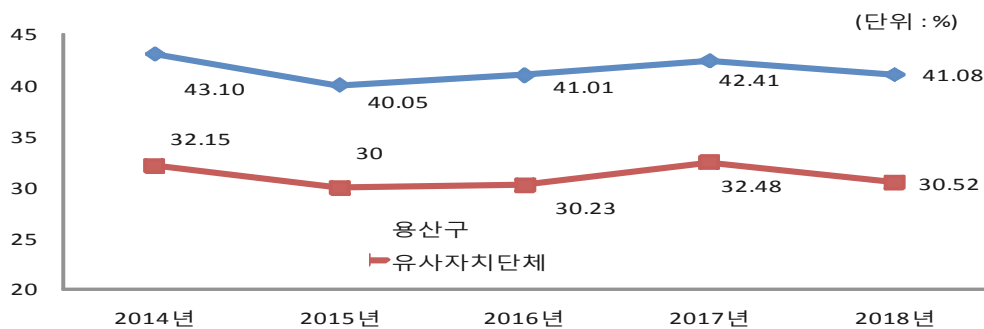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51.15 (43.10)	47.85 (40.05)	47.14 (41.01)	48.67 (42.41)	46.19 (41.08)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대로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 추이에 따라 총 세입 대비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4.40 (59.30)	352,545	227,054 (209,054)	125,490	0	0 (18,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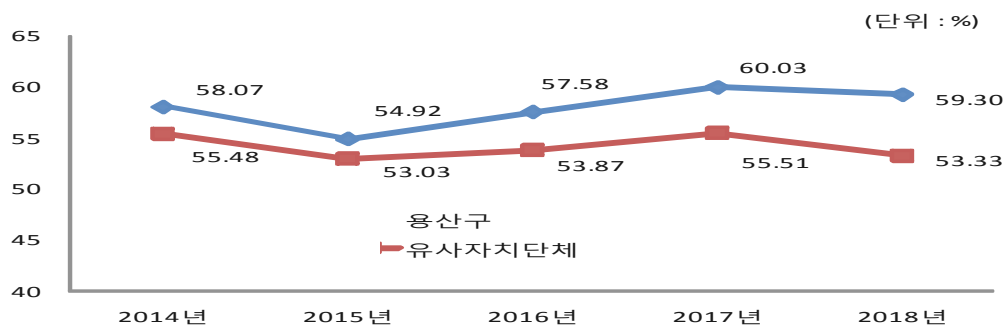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6.12 (58.07)	62.72 (54.92)	63.71 (57.58)	66.29 (60.03)	64.40 (59.30)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재원 보다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예산의 증가폭이 커져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의 비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 3-3. 통합재정수지

☐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 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52,515	386,204	2,456	3,582	1,126	40,470	387,330	△34,815	5,655
일반회계	334,545	350,081	0	0	0	18,000	350,081	△15,536	2,464
기타 특별회계	10,334	32,531	27	300	273	22,470	32,805	△22,470	0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7,636	3,591	2,429	3,282	853	0	4,445	3,191	3,191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21,386	△28,230	△17,825	△44,513	△34,815
통합재정수지 2	8,555	6,869	19,770	237	5,655

- ☞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포함하면(통합재정수지 2) 56억원 흑자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수지에 미포함 할 경우(통합재정수지 1) 348억원이 적자입니다.
- ☞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출 절감 등의 노력과 세입 초과 확보로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4. 재정운용계획

##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43,310	456,500	469,910	484,747	498,473	2,352,940	3.00
자체수입	164,795	163,392	168,228	171,501	174,886	842,802	1.50
이 전 수 입	203,889	212,651	221,755	232,670	242,338	1,113,303	4.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626	80,457	79,927	80,577	81,249	396,836	2.10
세 출	443,310	456,500	469,910	484,747	498,473	2,352,940	3.00
경 상 지 출	178,290	182,618	188,542	193,559	198,905	941,914	2.80
사 업 수 요	265,020	273,883	281,368	291,188	299,568	1,411,027	3.1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 - 1] × 100

## 4-2. 성인지 예산현황

-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7	19,008
여성정책추진사업	22	14,1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4,88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yongsan.go.kr](http://www.yongsan.go.kr), 행정정보, 예산/재정정보, 예산일반현황)

####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 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구는 모델 1(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25,138	293	1

##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93	
자치행정과	자치프로그램 강의실 환기시설 설치	30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내부 커튼교체	22	
자치행정과	용문동 자치회관 음향기기 및 빔프로젝트 교체	9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다목적실 주민공간으로 조성	10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주민모임 공간 조성	30	
자치행정과	4층 체육관 내 빔프로젝트 설치	10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여성화장실 공간확충	30	
여성가족과	작지만 아이들의 소중한 야외공간을 안전하게	60	
문화체육과	해설이 있는 역사문화탐방	50	
청소행정과 토목과	동자동 쓰레기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사업	42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yongsan.go.kr](http://www.yongsan.go.kr), 행정정보, 예산/재정정보, 예산주민참여방)

## 4-4. 성과계획서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10	64	151	146	385,376	355,534	29,842
감사담당관	1	1	3	5	202	201	1
홍보담당관	1	1	3	3	1,484	1,493	△9
행복드림담당관	1	1	1	1	565	3,685	△3,121
행정지원국	1	10	25	28	124,935	114,655	10,280
재정경제국	1	8	16	18	5,099	5,430	△332
주민생활지원국	1	18	41	28	186,338	161,533	24,805
도시관리국	1	11	24	19	4,505	4,392	113
안전건설교통국	1	8	21	22	43,491	45,273	△1,782
보건소	1	5	15	20	15,449	15,728	△278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제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46.19	64.4	42.92	26.11	41.55	56.13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yongsan.go.kr, 행정정보, 예산/재정정보, 예산일반현황)

##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	78	-
	부단체장		5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40	821	△81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259	96	△15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	
	의원국외여비		28	
지방보조금		4,044	3,835	△209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236	1,236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3,363	-
공무원 일·숙직비		-	151	-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 기준경비 산출내역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 = '18년 3개 통계목 총액한도 산정방법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지방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176))+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기준액=전년도 보조금 한도 기준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률)
	전년도 기준액(3,891백만원)×(1+0.039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기본수당 200천원/월,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2회) 반장보상품 연50,000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29만원 이내로 설정 기준액 이상인 경우 '17년과 동일하게 편성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일·숙직비 1일당 50,000원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자율조정 가능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구가 행정자치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은 없습니다.